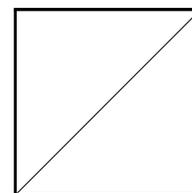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1. 6. (제 1 차)

의  
결  
사  
항

(주)산타크루즈컴퍼니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도 규 상
제출 연월일	2021. 1. 6.

## 1. 의결주문

(주)산타크루즈컴퍼니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2020. 8.10.부터 비상장법인 (주)산타크루즈컴퍼니의 공시의무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견된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제출의무 위반

○ 과태료 : (주)산타크루즈컴퍼니[비상장법인] 17,500,000원

##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 붙임 1 >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6호,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호, 제390조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49조 제1항 제36호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38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90조 및 [별표 22]

나. (주)산타크루즈컴퍼니에 대한 과태료 산정내역 : < 붙임 2 >

(별지)

## (주)산타크루즈컴퍼니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산타크루즈컴퍼니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의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6호에 의하여 과태료 17,500,000원을 부과한다.

###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주)산타크루즈컴퍼니 [비상장법인]

- 대표이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XXX-XX-XXXXX

- 본점 소재지 : △△△△△ △△△ △△△△△△△ △△ △△△△ △△

### □ 조치이유

○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제출의무 위반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10억원 미만의 증권을 모집한 발행인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결산에 관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주)산타크루즈컴퍼니는 2016. 6.10.(납입일) 40백만원의 소액공모를 실시한 후 2016 사업연도 결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 관 계 법 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0.17. 대통령령 제2838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투. 법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6호	5,000
-----------------------------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 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및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 명세서

나.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명세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만 해당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푸. 법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6호	6,000만원
-----------------------------	--------------------	---------

## (주)산타크루즈컴퍼니에 대한 과태료 산정내역

### I. 산정원칙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36호에 해당하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5천만원(17. 10. 17. 개정이후 6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제2호의2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며,
  - 과태료 예정금액의 산정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제2호의2 [과태료 부과기준] 3.예정금액의 산정 가.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함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과태료 등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현재 기준을 적용

### II. 산정결과

□ 총 과태료 부과금액 : 17,500,000원

(단위: 원)

구 분	과태료 부과금액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제출의무 위반	17,500,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조사단	공 시 심 사 실
연 락 처	02-2100-2518	02-3145-8470